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시설물은 “안심조명시설” 등의 시설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설치는 각각 조성으로 한다.

안 제6조는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 대비표>

<신 설>

제6조(유지관리) 구청장	제6조(유지관리) 구청장
은 매년 안심귀갓길에	은 안심귀갓길에 설치
설치된 안전시설의 정	된 안전시설이 지속적
상작동 여부를 점검하	이고 효율적으로 유지
여 기록하여야 한다.	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